"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Ι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14블록(북면 무동리 일반 121-1)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6개동 지하3층 ~ 지상 23층 총 5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단위 : m² / 세대)

| 구분 | 주택형 | Туре | 세대수 | 세 | 대별 공급면적(| 배정세대수 | 입주 예정시기 | | |
|----------|---------|------|-----|---------|----------|---------|------------|--------|--|
| | | | | 전용 | 공용 | 소계 | 배경제네ㅜ | 예정시기 | |
| 민영 주택 | 63.6407 | 63A | 35 | 63.6407 | 19.5550 | 83.1957 | 3 | | |
| | 63.8240 | 63B | 137 | 63.8240 | 20.2352 | 84.0592 | 13 | 23년11월 | |
| | 75.7799 | 75 | 353 | 75.7799 | 23.0215 | 98.8014 | 35 | | |
| | 계 | | 525 | | | | 51 | | |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단위 : 세대)

| 구분 | | 기관추천특별공급배정세대(예비) | | | | | | | |
|----------------|---------------|------------------|------|-----|------|----|------|------|------|
| | | 63A | | 63B | | 75 | | 배정세대 | |
| | | 대상 | (예비) | 대상 | (예비) | 대상 | (예비) | 대상 | (예비) |
| 기관추천 -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5 | 4 | 20 | 13 | 65 | 18 | 90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1 | 5 | 1 | 5 | 2 | 10 |
| | 중소기업근로자 | - | - | 1 | 5 | 1 | 5 | 2 | 10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1 | 5 | 1 | 5 | 3 | 15 | 5 | 25 |
| | 북한이탈자 | - | - | 1 | 5 | 2 | 10 | 3 | 15 |
| | 장애인 | 1 | 5 | 5 | 25 | 15 | 75 | 21 | 105 |
| 합계 | | 3 | 15 | 13 | 65 | 35 | 175 | 51 | 255 |

- ※ 당첨자 선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당첨자입니다.

■ 분양 일정(예정)

| 구분 | | 일자 | 참고사항 | | |
|----------------------------------|--|---------------------------------------|---|--|--|
| 입주자모집공고 | | 2021.07.22.(목) | '무동 동원로얄듀크'홈페이지(http://www.dongwonapt.co.kr/mudong | | |
| 주택전시관개관 | | 2021.07.23.(금) |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11 | | |
| 특별공급 접수일시 | | | 청약Home(www.applyhome.co.kr) 사이트 통한 청약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익 가능! | | |
|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발표) | | 2021.08.11.(수) |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조회가능 | |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 | 2021.08.13.(금) ~ 2021.08.20.(금) |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11 | | |
| 적격자 정당계약 | | 2021.08.23.(월) ~ 2021.08.25.(수) | 000±0±11 = 01 = 00 57 11 | | |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주택전시관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전시관 방문 시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됩니다.

п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7. 22.(목) 예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등,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자, 장애인) 선정하여 추천을 받으신 '무 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예금 : 전용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 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경상남도(창원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
|--------------|-----------|-------|-------|--|
| 전용면적 85m²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22(목)]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
-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은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함)
- 4. 부적격 당첨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경우
- 5.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재생부지제공자 등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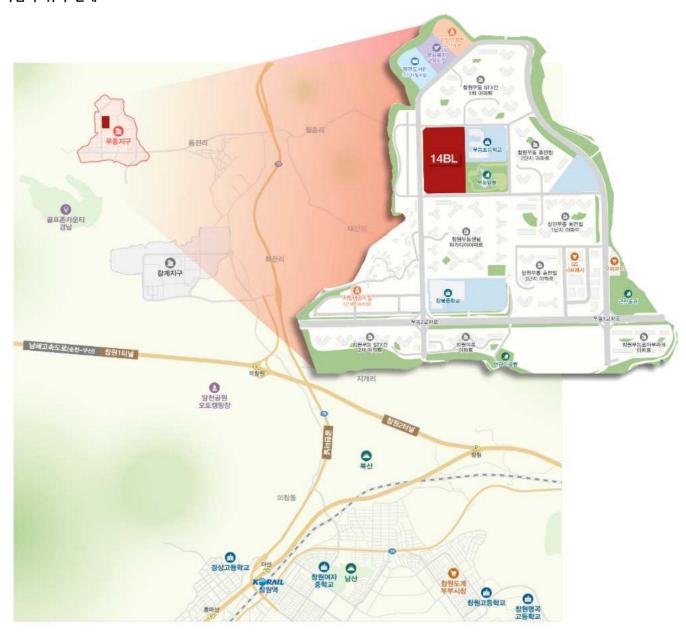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Ш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및 분양권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 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 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 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홈페이지(http://www.dongwonapt.co.kr/mudong1) 및 안내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문은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위치 안내



기타 문의 전화: 055-288-9180(변경예정)

주택전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11 홈페이지 : http://www.dongwonapt.co.kr/mudong1